

무배당

큰사랑운전자안심공제

1종 - 보 통 약 관

우배당 큰사랑운전자안심공제- 1종 보 통 약 관

제1관 공제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 【공제계약의 성립】

- ① 공제계약은 공제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농협(중앙회,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승낙으로 이루어 집니다.(이하 공제계약은 "계약", 공제계약자는 "계약자"라 합니다)
- ② 농협은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③ 농협은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공제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진단일을 말합니다)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를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 ④ 농협이 제1회 공제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공제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공제의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제1회 공제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후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 【청약의 철회】

-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공제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② 농협은 제1항에 의한 계약자의 청약철회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돌려 드리며, 공제료 반환이 지체된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공제의 공제계약대

출(공제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계약자가 제1회 공제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농협은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① 농협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청약서 부분을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제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 물)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거래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약관 및 청약서 부분을 전자문서로 송신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문서를 수신하였을 때에는 약관 및 청약서 부분을 드린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물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 ② 농협이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청약서 부분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 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 [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농협은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돌려 드리며 공제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공제계약대출(공제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4조 【계약의 무효】

타인의 사망을 공제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피공제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공제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 【계약내용의 변경】

- ① 계약자는 농협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1. 공제가입금액
 - 2.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공제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
 - 3. 기타 계약의 내용
- ② 농협은 계약자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농협이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9조(해약환급금)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계약자가 제1항 제2호 중 사망공제금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공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공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④ 계약자가 제1항 제2호 중 피공제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피공제자가 이 공제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 파산, 이민 또는 이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경우
 - 2. 계약자가 그와 고용관계에 있는 피공제자를 해고 또는 교체한 경우

<용어풀이>

고용관계라 함은 피고용인이 고용인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고용인은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관계를 말합니다.

제6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농협은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 【계약의 소멸】

- ①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농협은 제15조(후유장해공제금)의 일반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한 때에는 남은 공제기간에 대하여 계약의 공제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제14조(사망공제금)의 사망공제금 또는 제15조(후유장해공제금)의 고도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농협은 만기축하금 및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농협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 때까지 농협이 적립한 적립부분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이외의 사유로 사망하여 이 공제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 농협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공제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해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8조 【농협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 ① 농협의 보장은 공제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며 마지막 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이 경우 시각은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 발행지의 표준시에 따릅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협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회 공제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 ③ 농협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공제료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공제사고가 생긴 때에는 농협은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협은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1항에서 정한 보장의 시기가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
 2. 제23조(계약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농협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공

제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농협이 증명하는 경우

3. 제2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하여 농협이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 ⑤ 제2항 및 제3항의 공제료는 제12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를 보상하는데 필요한 공제료(이하 "보장공제료"라 합니다)와 농협이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공제료(이하 "적립공제료"라 합니다)로 구성됩니다.(이하 "보장공제료"와 "적립공제료"를 합하여 "공제료"라 합니다.)

제2관 공제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9조 【공제료의 납입】

-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공제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농협은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기관(우체국 포함)을 통하여 공제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 ② 공제료를 선납할 경우에 선납공제료는 당월분을 포함하여 12개월분 이하의 공제료를 선납할 때에 한하며, 선납공제료는 약정한 공제료의 배수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10조 【공제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공제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농협은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독촉)하고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공제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농협은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방문수금 불이행 또는 은행납입통지서의 미교부, 자동이체 미신청 등 농협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

여 계약자가 공제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기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농협이 공제료를 수금 또는 자동이체하기로 하거나 은행납입통지서를 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금(자동이체) 또는 재교부일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 하여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적용합니다.

- ③ 제2회 이후의 공제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공제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농협은 계약자[타인을 위한 공제의 경우 특정된 수익자]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안에 연체된 공제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공제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됨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 드립니다.
-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1조 【공제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제10조[공제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농협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농협이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공제료에 이 계약의 예정이율+1% 범위 내에서 농협이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하여는 제1조(공제계약의 성립), 제8조(농협의 보증의 시기 및 중기), 제23조(계약전 알릴의무) 및 제25조(알릴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합니다.

제3관 공제금의 지급(농협의 주된 의무)

제12조 【보상하는 손해】

- ① 농협은 공제증권에 기재된 피공제자가 공제기간중에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2.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교통승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함)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3.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적재물을 포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이하 「비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용어풀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공제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 ③ 제1항에서 기타교통승용구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함),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타보트, 보트 포함)
4. 6중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교통승용구로 보지 아니함)

제13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① 농협은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공제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공제금의 일부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공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제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공제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단,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피공제자의 질병
 6. 피공제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7. 피공제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농협이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8. 피공제자의 사형
 9.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10.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1.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2. 제11호 이외의 방사선을 쬌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② 농협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공제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 ③ 농협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공제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2.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④ 농협은 그 원인의 직접·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보지 아니합니다.
1. 피공제자가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함)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손해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
 3.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용구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기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손해

제14조 【사망공제금】

- ① 농협은 피공제자가 제1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공제가입금액을 사망공제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피공제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공제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공제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공제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공제금을 지급한 후에 피공제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공제금을 회수합니다.

제15조 【후유장해공제금】

- ① 고도후유장해공제금 : 농협은 피공제자가 제1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공제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공제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일반후유장해공제금 : 농협은 피공제자가 제1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공제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공제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합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후유장해공제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 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애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애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장애분류표에 장애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⑤ 장애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공제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의 각 장애분류별 최저지급률 장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⑥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애분류표상의 두가지 이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제16조 【다른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

- ① 피공제자가 제1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경우 이미 존재한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또는 제1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후에 그 원인이 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의 영향으로 제1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 농협은 그 영향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 ② 정당한 이유없이 피공제자가 치료를 게을리하거나 또는 계약자나 수익자가 치료를 하여 주지 않음으로 인하여 제1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제17조 【공제금의 지급한도】

- ① 농협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사고에 대한 후유장해공제금은 고도후유장해공제금을 한도로 합니다.
- ② 농협은 하나의 사고로 사망공제금과 일반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이를 각각 지급합니다. 그러나 고도후유장해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사망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8조 【만기촉하금의 지급】

농협은 계약자가 공제료를 완납하고 공제기간이 끝난 때에는 적립부분 순공제료(적립공제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공제료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대하여 공제료 납입일(농협에 입금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공제료 납입경과기간에 따라 제19조(해약환급금)의 제1항에 준하여 그때까지 농협이 적립한 금액을 만기촉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이 약관에 정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원리금 합계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제19조 【해약환급금】

- ① 이 약관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때 적립부분 순공제료에 대하여는 농협은 보장개시일로부터 공제료 납입경과기간에 따라 아래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공제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장이율은 연복리 2.0%로 합니다.

경과기간	이율
1년미만	공시이율×85%
1년이상 ~ 2년미만	공시이율×90%
2년이상 ~ 3년미만	공시이율×95%
3년이상	공시이율

- ② 농협은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20조 【배당금의 지급】

농협은 이 공제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21조 【소멸시효】

공제금 청구권, 공제료 및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22조 【공제금 청구권의 상실】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수익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공제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에는 피공제자 또는 수익자는 손해에 대한 공제금 청구권을 상실합니다.

제4관 공제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 등

제23조 【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이하 "계약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계약 후 알릴 의무】

- ①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공제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농협에 알리고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② 농협은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공제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제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의 통지에 따라 공제료를 더 내야 할 경우 농협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을 게을리 했을 때, 농협은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공제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공제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공제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는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④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농협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농협은 동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제3항에 의해 보상됨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제25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① 농협은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3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24조(계약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1. 농협이 계약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 2. 농협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공제자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났

을 때

3. 농협이 이 계약의 청약시 피공제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 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농협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4. 공제를 모집한 자(이하 「직원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 ③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④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농협은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해약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공제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 ⑤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제24조(계약후 알릴 의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⑥ 손해가 제1항에 해당되는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닌 것으로 증명된 때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6조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농협은 보장개시일부터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공제자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중 사기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 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 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농협이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

일부터 5년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관 공제금 지급등의 절차

제27조 【주소변경 통지】

-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농협에 알려야 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농협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28조 【공제수익자의 지정】

계약자는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8조(만기축하금의 지급)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제14조(사망공제금)의 경우는 피공제자의 상속인으로, 제15조(후유장해공제금)경우는 피공제자로 합니다.

제29조 【대표자의 지정】

- 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대표자로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농협이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連帶)로 합니다.

제30조 【손해의 통지】

- ①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농협에 알려야 합니다.

- ②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수익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농협은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③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수익자는 관계관청이나 법원으로부터 소환장, 구속영장 및 그 밖의 서류의 송달이나 구두에 의한 중요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농협에 그 내용을 알리고 그러한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제31조 【공제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① 계약자, 피공제자(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공제금 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농협양식)
 -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애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 3. 공제증권
 -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 5. 기타 수익자가 공제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

제32조 【공제금의 지급】

- ① 농협은 제31조(공제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공제금은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공제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② 농협이 공제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공제자 또는 수익자에게 서면통지하여 드립니다.

니다.

- ③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농협은 피공제자 또는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농협이 추정하는 공제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공제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④ 농협은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공제계약대출(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⑤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수익자는 제2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농협의 조사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농협은 공제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3조 【환급금의 지급】

- ① 농협은 계약자 및 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리며, 환급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은 예정이율+1%를,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은 공제계약대출(공제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② 농협은 만기촉하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할 때에는 도래일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알려 드리며, 그 사유와 지급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③ 농협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알린 경우의 만기촉하금과 해약환급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중 1년 이내의 기간은 예정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를 연단위 복

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34조 【계약내용의 교환】

농협은 공제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공제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공제기관 또는 보험회사(보험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농협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개인 신용 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공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공제종목, 공제료, 공제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공제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4. 피공제자의 상해 및 질병에 관한 정보

제35조 【공제계약대출(공제약관대출)】

-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농협이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 공제 등 공제상품의 종류에 따라 공제계약대출(공제약관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② 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계약대출(약관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농협은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되어 공제금을 지급하는 날 또는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협은 제10조(공제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과 공제계약대출(약관대출) 원리금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5관 분쟁조정 등

제36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농협중앙회에 설치되어 있는 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37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농협과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8조 【약관의 해석】

- ① 농협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 ② 농협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제39조 【농협이 제작한 공제안내장의 효력】

직원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농협(지사무소 및 공제사업단 포함) 제작의 공제안내장(계약의 청약에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0조 【농협의 손해배상책임】

농협은 계약과 관련하여 임원 또는 직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및 농협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41조 【농업협동조합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급보장】

농협이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공제금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42조 【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무배당

큰사랑운전자안심공제

2종 - 보 통 약 관

우배당 큰사랑운전자안심공제- 2종 보 통 약 관

제1관 공제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 【공제계약의 성립】

- ① 공제계약은 공제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농협(중앙회,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승낙으로 이루어 집니다.(이하 공제계약은 "계약", 공제계약자는 "계약자"라 합니다)
- ② 농협은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③ 농협은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공제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진단일을 말합니다)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를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 ④ 농협이 제1회 공제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공제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공제의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제1회 공제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후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 【청약의 철회】

-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공제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② 농협은 제1항에 의한 계약자의 청약철회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돌려 드리며, 공제료 반환이 지체된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공제의 공제계약대

출(공제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계약자가 제1회 공제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농협은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① 농협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청약서 부분을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제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 물)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거래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약관 및 청약서 부분을 전자문서로 송신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문서를 수신하였을 때에는 약관 및 청약서 부분을 드린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물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 ② 농협이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청약서 부분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 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농협은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돌려 드리며 공제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공제계약대출(공제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4조 【계약의 무효】

타인의 사망을 공제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피공제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공제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 【계약내용의 변경】

- ① 계약자는 농협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1. 공제가입금액
 - 2.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공제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
 - 3. 기타 계약의 내용
- ② 농협은 계약자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농협이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9조(해약환급금)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계약자가 제1항 제2호 중 사망공제금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공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공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④ 계약자가 제1항 제2호 중 피공제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피공제자가 이 공제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 파산, 이민 또는 이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경우
 - 2. 계약자가 그와 고용관계에 있는 피공제자를 해고 또는 교체한 경우

<용어풀이>

고용관계라 함은 피고용인이 고용인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고용인은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관계를 말합니다.

제6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농협은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 【계약의 소멸】

- ① 농협이 제14조(사망공제금)의 사망공제금 또는 제15조(고도 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농협은 만기축하금 및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농협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 때까지 농협이 적립한 적립부분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이외의 사유로 사망하여 이 공제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 농협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공제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해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8조 【농협의 보장의 시기 및 중기】

- ① 농협의 보장은 공제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며 마지막 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이 경우 시각은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 발행지의 표준시에 따릅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협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회 공제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 ③ 농협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공제료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공제사고가 생긴 때에는 농협은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협은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 1. 제1항에서 정한 보장의 시기가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
 - 2. 제23조(계약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농협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공제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농협이 증명하는 경우
 - 3. 제2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하여 농협

이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 ⑤ 제2항 및 제3항의 공제료는 제12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를 보상하는데 필요한 공제료(이하 "보장공제료"라 합니다)와 농협이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공제료(이하 "적립공제료"라 합니다)로 구성됩니다.(이하 "보장공제료"와 "적립공제료"를 합하여 "공제료"라 합니다.)

제2관 공제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9조 【공제료의 납입】

-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공제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농협은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기관(우체국 포함)을 통하여 공제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 ② 공제료를 선납할 경우에 선납공제료는 당월분을 포함하여 12개월분 이하의 공제료를 선납할 때에 한하며, 선납공제료는 약정한 공제료의 배수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10조 【공제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공제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농협은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독촉)하고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공제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농협은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방문수금 불이행 또는 은행납입통지서의 미교부, 자동이체 미신청 등 농협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가 공제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기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농협이 공제료를 수금 또는 자동

이체하기로 하거나 은행납입통지서를 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금(자동이체) 또는 재교부일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 하여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적용합니다.

- ③ 제2회 이후의 공제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공제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농협은 계약자[타인을 위한 공제의 경우 특정된 수익자]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안에 연체된 공제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공제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됨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 드립니다.
-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1조 【공제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제10조[공제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농협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농협이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공제료에 이 계약의 예정이율+1% 범위 내에서 농협이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하여는 제1조(공제계약의 성립), 제8조(농협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제23조(계약전 알릴의무) 및 제25조(알릴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합니다.

제3관 공제금의 지급(농협의 주된 의무)

제12조 【보상하는 손해】

- ① 농협은 공제증권에 기재된 피공제자가 공제기간중에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2.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교통수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함)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3.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용구(적재물을 포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이하 「비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용어풀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차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공제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중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중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 ③ 제1항에서 기타교통수용구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함),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타보트, 보트 포함)
 4. 6중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교통수용구로 보

지 아니함)

제13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① 농협은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공제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공제금의 일부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공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제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공제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단,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피공제자의 질병
 6. 피공제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7. 피공제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농협이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8. 피공제자의 사형
 9.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10.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1.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2. 제11호 이외의 방사선을 쬌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② 농협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공제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돌려드리

지 아니합니다.

- ③ 농협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공제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2.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여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④ 농협은 그 원인의 직접·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보지 아니합니다.

1. 피공제자가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손해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
3.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손해

제14조 【사망공제금】

- ① 농협은 피공제자가 제1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공제가입금액을 사망공제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피공제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공제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공제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

라 호적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공제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공제금을 지급한 후에 피공제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공제금을 회수합니다.

제15조 【고도후유장해공제금】

- ① 농협은 피공제자가 제1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애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공제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공제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후유장해공제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장애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④ 장애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공제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애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⑤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제16조 【다른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

- ① 피공제자가 제1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경우 이미 존재한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또는 제1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후에 그 원인이 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의 영향으로 제1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 농협은 그 영향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 ② 정당한 이유없이 피공제자가 치료를 게을리하거나 또는 계약자나 수익자가 치료를 하여 주지 않음으로 인하여 제1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제17조 【공제금의 지급한도】

농협은 고도후유장해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사망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8조 【만기축하금의 지급】

농협은 계약자가 공제료를 완납하고 공제기간이 끝난 때에는 적립부분 순공제료(적립공제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공제료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대하여 공제료 납입일(농협에 입금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공제료 납입경과기간에 따라 제19조(해약환급금)의 제1항에 준하여 그때까지 농협이 적립한 금액을 만기축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이 약관에 정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원리금 합계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제19조 【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때 적립부분 순공제료에 대하여는 농협은 보장개시일로부터 공제료 납입경과기간에 따라 아래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공제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장이율은 연복리 2.0%로 합니다.

경과기간	이율
1년미만	공시이율×85%
1년이상 ~ 2년미만	공시이율×90%
2년이상 ~ 3년미만	공시이율×95%
3년이상	공시이율

② 농협은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20조 【배당금의 지급】

농협은 이 공제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21조 【소멸시효】

공제금 청구권, 공제료 및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22조 【공제금 청구권의 상실】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수익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공제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에는 피공제자 또는 수익자는 손해에 대한 공제금 청구권을 상실합니다.

제4관 공제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 등

제23조 【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이하 "계약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계약후 알릴 의무】

- ①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공제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농협에 알리고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② 농협은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공제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제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의 통지에 따라 공제료를 더 내야 할 경우 농협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을 게을리 했을 때, 농협은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공제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공제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공제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는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④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농협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농협은 동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제3항에 의해 보상됨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제25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① 농협은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3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24조(계약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1. 농협이 계약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 2. 농협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공제자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났을 때
 - 3. 농협이 이 계약의 청약시 피공제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 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농협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 4. 공제를 모집한 자(이하 「직원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 ③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④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농협은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해약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공제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 ⑤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제24조(계약후 알릴 의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⑥ 손해가 제1항에 해당되는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닌 것으로 증명된 때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6조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농협은 보장개시일부터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공제자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중 사기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 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 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농협이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관 공제금 지급등의 절차

제27조 【주소변경 통지】

-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농협에 알려야 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농협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28조 【공제수익자의 지정】

계약자는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8조(만기축하금의 지급)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제14조(사망공제금)의 경우는 피공제자의 상속인으로, 제15조(고도후유장해공제금)의 경우는 피공제자로 합니다.

제29조 【대표자의 지정】

- 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대표자로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농협이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連帶)로 합니다.

제30조 【손해의 통지】

- ①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농협에 알려야 합니다.
- ②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수익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농협은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③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수익자는 관계관청이나 법원으로부터 소환장, 구속영장 및 그 밖의 서류의 송달이나 구두에 의한 중요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농협에 그 내용을 알리고 그러한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제31조 【공제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① 계약자, 피공제자(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공제금 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농협양식)
 -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 3. 공제증권
 -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수익자가 공제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

제32조 【공제금의 지급】

- ① 농협은 제31조(공제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공제금은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공제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② 농협이 공제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공제자 또는 수익자에게 서면통지하여 드립니다.
- ③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농협은 피공제자 또는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농협이 추정하는 공제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공제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④ 농협은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공제계약대출(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⑤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수익자는 제2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농협의 조사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농협은 공제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3조 【환급금의 지급】

- ① 농협은 계약자 및 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리며, 환급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은 예정이율+1%를,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은 공제계약대출(공제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② 농협은 만기촉하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할 때에는 도래일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알려 드리며, 그 사유와 지급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③ 농협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알린 경우의 만기촉하금과 해약환급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중 1년 이내의 기간은 예정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34조 【계약내용의 교환】

농협은 공제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공제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공제기관 또는 보험회사(보험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농협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개인신용 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 1. 계약자 및 피공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2. 계약일, 공제종목, 공제료, 공제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 3. 공제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 4. 피공제자의 상해 및 질병에 관한 정보

제35조 【공제계약대출(공제약관대출)】

-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농협이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 공제 등 공제상품의 종류에 따라 공제계약대출(공제약관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② 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계약대출(약관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농협은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되어 공제금을 지급하는 날 또는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금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협은 제10조(공제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과 공제계약대출(약관대출) 원리금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5관 분쟁조정 등

제36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농협중앙회에 설치되어 있는 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37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농협과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8조 【약관의 해석】

- ① 농협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 ② 농협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제39조 【농협이 제작한 공제안내장의 효력】

직원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농협(지사무소 및 공제사업단 포함) 제작의 공제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0조 【농협의 손해배상책임】

농협은 계약과 관련하여 임원 또는 직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및 농협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41조 【농업협동조합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급 보장】

농협이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공제금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42조 【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무배당

큰사랑운전자안심공제

특 별 약 관

1. 교통상해사망담보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농협은 공제증권에 기재된 피공제자가 공제기간중에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2.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교통승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3.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적재물을 포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이하 「비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용어풀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공제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에서 기타교통승용구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함)

-),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타보트, 보트 포함)
- 4.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교통승용구로 보지 아니함)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농협은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인한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 【사망공제금】

- ① 농협은 피공제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공제가입금액을 사망공제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피공제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공제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공제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공제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공제금을 지급한 후에 피공제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공제금을 회수합니다.

제4조 【고도후유장해공제금】

- ① 농협은 피공제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애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

관의 공제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공제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애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애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후유장해공제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애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애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장애분류표에 장애판정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④ 장애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공제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애장도에 따라 장애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의 각 장애분류별 최저지급률 장애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⑤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애분류표상의 두가지 이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제5조 【다른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

- ① 피공제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경우 이미 존재한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후에 그 원인이 된 사고

와 관계없이 새로이 발생한 손해나 질병의 영향으로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손해가 중하게 된 경우 농협은 그 영향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 ② 정당한 이유없이 피공제자가 치료를 게을리하거나 또는 계약자나 수익자가 치료를 하여 주지 않음으로 인하여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손해가 중하게 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제6조 【계약의 소멸】

- ① 농협이 제3조(사망공제금) 또는 제4조(고도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보통약관 1종 또는 제2종 제7조(계약의 소멸)의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농협은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원인으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농협은 그 때까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협이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공제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해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1종 및 2종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1종에서 정한 제14조(사망공제금)의 사망공제금, 제15조(후유장해공제금)의 후유장해공제금 및 제18조(만기축하금의 지급)에서 정한 만기축하금 및 보통약관 2종에서 정한 제14조(사망공제금)의 사망공제금, 제15조(고도후유장해공제금)의 후유장해공제금 및 제18조(만기축하금의 지급)에서 정한 만기축하금은 지급하지 아니함

니다.

2. 교통상해 소득보상금담보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농협은 공제증권에 기재된 피공제자가 공제기간중에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
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이하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 2.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
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교통승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
함)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 3.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적재물을 포함)
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이하 「비탑
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용어풀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
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공제자가 자동차 운전
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
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
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
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
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
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
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
다.

③ 제1항에서 기타교통승용구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타보트, 보트 포함)
4.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교통승용구로 보지 아니함)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농협은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인한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 【교통상해 소득보상금】

- ① 농협은 피공제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에서 정한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때에는 1회의 사고에 한하여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 공제가입금액의 10%를 20년 동안 매년 사고발생 해당일에 교통상해 소득보상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후유장해공제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

준으로 후유장애 지급률을 결정하되 장애분류표에 장애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④ 장애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애는 피공제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애장도에 따라 장애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의 각 장애분류별 최저지급률 장애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애에 대하여는 후유장애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⑤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애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애분류표상의 두가지 이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 ⑦ 제1항의 소득보상금은 매년 사고발생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리며 수익자가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요청한 때에는 농협은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4조 【다른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

- ① 피공제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경우 이미 존재한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후에 그 원인이 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의 영향으로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 농협은 그 영향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 ② 정당한 이유없이 피공제자가 치료를 게을리하거나 또는 계약자나 수익자가 치료를 하여 주지 않음으로 인하여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제5조 【계약의 소멸】

- ① 농협이 제3조(교통상해소득보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보통약관 1종 또는 제2종 제7조(계약의 소멸)의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농협은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원인으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농협은 그 때까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협이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공제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해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1종 및 2종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1종에서 정한 제14조(사망공제금)의 사망공제금, 제15조(후유장해공제금)의 후유장해공제금 및 제18조(만기축하금의 지급)에서 정한 만기축하금 및 보통약관 2종에서 정한 제14조(사망공제금)의 사망공제금, 제15조(고도후유장해공제금)의 후유장해공제금 및 제18조(만기축하금의 지급)에서 정한 만기축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3. 교통상해의료비담보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 ① 농협은 공제증권에 기재된 피공제자가 공제기간중에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이하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2.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 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교통승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3.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적재물을 포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이하 「비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용어풀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공제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중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중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 ③ 제1항에서 기타교통승용구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타보트, 보트 포함)
 4. 6중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교통승용구로 보지 아니함)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농협은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인한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 【교통상해의료비】

- ① 농협은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피공제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1사고당 이 특별약관의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피공제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일부터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공제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자동차사고, 산업재해보상사고 등을 포함합니다)에는 발생한 의료비 총액의 50%해당액을 1사고당 이 특별약관의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1. 한약재 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 2. 병실료 차액(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 합니다)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내에서 예외로 합니다.
 - 3.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고단위영양제 투여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없는 검사비용
- ④ 제1항 내지 제2항의 비용에 대하여 공제금을 지급할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의 비용을 초과했을 때 농협은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교통상해의료비공제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다수의 보험 및 공제계약에 해당하는 보험 및 공제종목은 제3보험 및 공제의 상해·질병·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장기손해·개인연금·퇴직보험으로 합니다.

제4조 【공제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① 계약자, 피공제자(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공제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농협양식)
 2. 사고증명서(치료비지불 영수증 원본, 진료비청구 명세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수익자가 공제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

제5조 【계약의 소멸】

- ① 보통약관 1종 또는 제2종 제7조(계약의 소멸)의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농협은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③ 제1항 이외의 원인으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농협은 그 때까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협이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공제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해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1종 및 2종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1종에서 정한 제14조(사망공제금)의 사망공제금, 제15조(후유장해공제금)의 후유장해공제금 및 제18조(만기축하금의 지급)에서 정한 만기축하금 및 보통약관 2종에서 정한 제14조(사망공제금)의 사망공제금, 제15조(고도후유장해공제금)의 후유장해공제금 및 제18조(만기축하금의 지급)에서 정한 만기축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4. 상해확장 I 담보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 ① 농협은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① 농협은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1. 피공제자의 고의
 -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공제금의 일부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공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제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3. 계약자의 고의

4. 피공제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단,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피공제자의 질병
 6. 피공제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7. 피공제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농협이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8. 피공제자의 사형
 9.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10.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1.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2. 제11호 이외의 방사선을 쬌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② 농협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공제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 ③ 농협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공제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2.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

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위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3조 【사망공제금】

- ① 농협은 피공제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공제가입금액을 사망공제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피공제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공제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무기관이 피공제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공제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공제금을 지급한 후에 피공제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공제금을 회수합니다.

제4조 【후유장해공제금】

- ① 고도후유장해공제금 : 농협은 피공제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애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공제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공제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일반후유장해공제금 : 농협은 피공제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애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공제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공제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합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후유장해공제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 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공제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장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⑥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제5조 【소득보상금】

- ① 농협은 피공제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손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애분류표 ([별표1] 참조)에서 정한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때에는 1회의 사고에 한하여 공제가입증서 (공제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 공제가입금액의 10%를 20년 동안 매년 사고발생 해당일에 교통상해 소득보상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후유장해공제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장애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④ 장애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공제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장도에 따라 장애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의 각 장애분류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⑤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애분류표상의 두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 ⑦ 제1항의 소득보상금은 매년 사고발생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리며 수익자가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요청한 때에는 농협은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6조 【다른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

- ① 피공제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경우 이미 존재한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후에 그 원인이 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의 영향으로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손해가 중하게 된 경우 농협은 그 영향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 ② 정당한 이유없이 피공제자가 치료를 게을리하거나 또는 계약자나 수익자가 치료를 하여 주지 않음으로 인하여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손해가 중하게 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제7조 【계약의 소멸】

- ① 농협이 제3조(사망공제금), 제4조(후유장해공제금)의 고도 후유장해공제금 또는 제5조(소득보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 ② 보통약관 1종 또는 제2종 제7조(계약의 소멸)의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농협은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원인으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농협은 그 때까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협이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공제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

의 고의로 인해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1종 및 2종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1종에서 정한 제14조(사망공제금)의 사망공제금, 제15조(후유장해공제금)의 후유장해공제금 및 제18조(만기축하금의 지급)에서 정한 만기축하금 및 보통약관 2종에서 정한 제14조(사망공제금)의 사망공제금, 제15조(고도후유장해공제금)의 후유장해공제금 및 제18조(만기축하금의 지급)에서 정한 만기축하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5. 상해확장Ⅱ 담보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 ① 농협은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① 농협은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공제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공제금의 일부수익

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공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제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공제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단,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피공제자의 질병
 6. 피공제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7. 피공제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농협이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8. 피공제자의 사형
 9.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10.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1.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2. 제11호 이외의 방사선을 쬌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② 농협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공제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 ③ 농협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공제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2.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3조 【사망공제금】

- ① 농협은 피공제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공제가입금액을 사망공제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피공제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공제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공제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공제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공제금을 지급한 후에 피공제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공제금을 회수합니다.

제4조 【고도후유장해공제금】

- ① 농협은 피공제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애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공제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공제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후유장해공제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④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공제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장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⑤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제5조 【소득보상금】

- ① 농협은 피공제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에서 정한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때에는 1회의 사고에 한하여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 공제가입금액의 10%를

- 20년 동안 매년 사고발생 해당일에 교통상해 소득보상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후유장해공제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④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공제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장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⑤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 ⑦ 제1항의 소득보상금은 매년 사고발생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리며 수익자가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요청한 때에는 농협은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6조 【다른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

- ① 피공제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경우 이미 존재한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후에 그 원인이 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의 영향으로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 농협은 그 영향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 ② 정당한 이유없이 피공제자가 치료를 게을리하거나 또는 계약자나 수익자가 치료를 하여 주지 않음으로 인하여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제7조 【계약의 소멸】

- ① 농협이 제3조(사망공제금), 제4조(고도후유장해공제금) 또는 제5조(소득보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 ② 보통약관 1종 또는 제2종 제7조(계약의 소멸)의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농협은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원인으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농협은 그 때까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협이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공제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해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1종 및 2종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1종에서 정한 제14조(사망공제금)의 사망공제금, 제15조(후유장해공제금)의 후유장해공제금 및 제18조(만기축하금의 지급)에서 정한 만기축하

금 및 보통약관 2중에서 정한 제14조(사망공제금)의 사망공제금, 제15조(고도후유장해공제금)의 후유장해공제금 및 제18조(만기축하금의 지급)에서 정한 만기축하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6. 상해의료비담보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 ① 농협은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피공제자가 공제 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① 농협은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1. 피공제자의 고의
 -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공제금의 일부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공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제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3. 계약자의 고의
 - 4. 피공제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단,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5. 피공제자의 질병
 - 6. 피공제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7. 피공제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농협이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8. 피공제자의 사형
 9.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10.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1.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2. 제11호 이외의 방사선을 쬌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② 농협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공제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 ③ 농협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공제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2.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3조 【상해의료비】

- ① 농협은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피공제자가 제1조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1사고당 이 특별약관의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피공제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일부터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공제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자동차사고, 산업재해보상사고 등을 포함합니다)에는 발생한 의료비 총액의 50%해당액을 1사고당 이 특별약관의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1. 한약재 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 2. 병실료 차액(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 합니다)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내에서 예외로 합니다.
 - 3.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고단위영양제 투여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없는 검사비용
- ④ 제1항 내지 제2항의 비용에 대하여 공제금을 지급할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의 비용을 초과했을 때 농협은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상해의료비 공제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다수의 보험 및 공제계약에 해당하는 보험 및 공제종목은 제3보험 및 공제의 상해·질병·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장기손해·개인연금·퇴직보험으로 합니다.

제4조 【공제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① 계약자, 피공제자(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공제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농협양식)
 - 2. 사고증명서(치료비지불 영수증 원본, 진료비청구 명세서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 증명서 포함)
 - 4. 기타 수익자가 공제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

제5조 【계약의 소멸】

- ① 보통약관 1종 또는 제2종 제7조(계약의 소멸)의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농협은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 이외의 원인으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농협은 그 때까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협이 적용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공제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해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1종 및 2종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1종에서 정한 제14조(사망공제금)의 사망공제금, 제15조(후유장해공제금)의 후유

장해공제금 및 제18조(만기축하금의 지급)에서 정한 만기축하금 및 보통약관 2종에서 정한 제14조(사망공제금)의 사망공제금, 제15조(고도후유장해공제금)의 후유장해공제금 및 제18조(만기축하금의 지급)에서 정한 만기축하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7. 강력범죄발생위로금담보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 ① 농협은 공제가입증서(공제약관)에 기재된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공제가입금액을 강력범죄발생위로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1. 형법 제24장에서 말하는 살인의 죄
 - 2. 형법 제25장에서 말하는 상해와 폭행의 죄
 - 3. 형법 제32장에서 말하는 강간과 추행의 죄 중 강간죄
 - 4. 형법 제38장에서 말하는 절도와 강도의 죄 중 강도죄
 - 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이라 합니다)에 정한 폭력 등의 죄
- ② 제1항 제1호의 살인, 제2호의 상해 및 폭행 및 제3호의 폭력 등의 경우에는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상해를 입은 때에만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농협은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1. 피공제자가 범죄행위를 하던 중 또는 "폭처법" 제4조의 범죄단체를 구성 또는 이에 가담함으로써 발생된 손해
 - 2. 피공제자 및 수익자의 고의 또는 피공제자의 배우자 및 직

계존비속에 의한 손해

3. 피공제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고용인 내지 고용상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 의해 발생한 손해
4. 전쟁, 폭동, 소요, 노동쟁의 또는 이와 유사한 사변 중에 생긴 손해
5. 지진, 분화, 해일, 풍수해 또는 그 밖의 변재가 일어났을 때에 생긴 손해

제3조 【공제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수익자가 공제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경찰서 신고확인서(관할경찰서장 발행)
2. 의사진단서 등

제4조 【계약의 소멸】

- ① 보통약관 1종 또는 제2종 제7조(계약의 소멸)의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농협은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 이외의 원인으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농협은 그 때까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협이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공제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해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5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1종 및 2종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1종에서 정한 제14조(사망공제금)의 사망공제금, 제15조(후유장해공제금)의 후유장해공제금 및 제18조(만기축하금의 지급)에서 정한 만기축하금 및 보통약관 2종에서 정한 제14조(사망공제금)의 사망공제금, 제15조(고도후유장해공제금)의 후유장해공제금 및 제18조

(만기촉하금의 지급)에서 정한 만기촉하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8. 면허정지위로금 담보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 ① 농협은 공제가입증서(공제약관)에 기재된 피공제자가 공제 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등 신체보조장구를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피공제자의 자동차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일시 정지되었을 때에는 면허정지 기간동안 최고 60일을 한도로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일당액을 면허정지위로금으로 1사고마다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유가 교통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면허정지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② 제1항에서 면허정지기간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교정교육을 이수하여 면허정지기간을 감경받았거나 감경받을 수 있는 경우를 차감한 기간을 말합니다. 단, 행정기관의 교정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면허정지기간을 감경받지 못하여 면허정지 처분기간 이후에 경찰서의 행정처분조회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③ 제1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공제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④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

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① 농협은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1. 보통약관 1종 및 2종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의한 사고
 - 2. 피공제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 3. 피공제자가 도로교통법 제40조, 제41조에 정한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4. 피공제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② 농협은 제1항 제1호에 정한 사항 중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종 또는 제2종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3조 【계약의 소멸】

- ① 보통약관 1종 또는 제2종 제7조(계약의 소멸)의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농협은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③ 제1항 이외의 원인으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농협은 그 때까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협이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공제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해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1종 및 2종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1종에서 정한 제14조(사망공제금)의 사망공제금, 제15조(후유장해공제금)의 후유장해공제금 및 제18조(만기축하금의 지급)에서 정한 만기축하

금 및 보통약관 2종에서 정한 제14조(사망공제금)의 사망공제금, 제15조(고도후유장해공제금)의 후유장해공제금 및 제18조(만기축하금의 지급)에서 정한 만기축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9. 면허취소위로금 담보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 ① 농협은 공제가입증서(공제약관)에 기재된 피공제자가 공제 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등 신체보조장구를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피공제자의 자동차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취소되었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공제가입금액을 면허취소위로금으로 1사고마다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공제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① 농협은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1. 보통약관 1종 및 2종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의한 사고

2. 피공제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3. 피공제자가 도로교통법 제40조, 제41조에 정한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4. 피공제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② 농협은 제1항 제1호에 정한 사항 중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종 또는 제2종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3조 【계약의 소멸】

- ① 보통약관 1종 또는 제2종 제7조(계약의 소멸)의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농협은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 이외의 원인으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농협은 그 때까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협이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공제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해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1종 및 2종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1종에서 정한 제14조(사망공제금)의 사망공제금, 제15조(후유장해공제금)의 후유장해공제금 및 제18조(만기축하금의 지급)에서 정한 만기축하금 및 보통약관 2종에서 정한 제14조(사망공제금)의 사망공제금, 제15조(고도후유장해공제금)의 후유장해공제금 및 제18조(만기축하금의 지급)에서 정한 만기축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0. 벌금담보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 ① 농협은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피공제자가 공제 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힘으로서 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을 1사고마다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한도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공제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공제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의 벌금에 대하여 공제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보험 및 공제를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공제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농협은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농협은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1. 보통약관 1종 및 2종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의한 사고

2. 피공제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3. 피공제자가 도로교통법 제40조, 제41조에 정한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4. 피공제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제3조 【계약의 소멸】

- ① 보통약관 1종 또는 제2종 제7조(계약의 소멸)의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농협은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 이외의 원인으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농협은 그 때까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협이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공제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해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1종 및 2종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1종에서 정한 제14조(사망공제금)의 사망공제금, 제15조(후유장해공제금)의 후유장해공제금 및 제18조(만기축하금의 지급)에서 정한 만기축하금 및 보통약관 2종에서 정한 제14조(사망공제금)의 사망공제금, 제15조(고도후유장해공제금)의 후유장해공제금 및 제18조(만기축하금의 지급)에서 정한 만기축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2. 생활안정지원금 담보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 ① 농협은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피공제자가 공제

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힘으로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을 경우에는 1사고마다 이 특별약관에 따라 구속기간 동안 최고 180일을 한도로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일당액을 생활안정지원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공제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공제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① 농협은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1. 보통약관 1종 및 2종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의한 사고
 - 2. 피공제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 3. 피공제자가 도로교통법 제40조, 제41조에 정한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4. 피공제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② 농협은 제1항 제1호에 정한 사항 중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1종 및 2종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3조 【계약의 소멸】

- ① 보통약관 1종 또는 제2종 제7조(계약의 소멸)의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농협은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 이외의 원인으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농협은 그 때까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협이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공제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해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1종 및 2종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1종에서 정한 제14조(사망공제금)의 사망공제금, 제15조(후유장해공제금)의 후유장해공제금 및 제18조(만기축하금의 지급)에서 정한 만기축하금 및 보통약관 2종에서 정한 제14조(사망공제금)의 사망공제금, 제15조(고도후유장해공제금)의 후유장해공제금 및 제18조(만기축하금의 지급)에서 정한 만기축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3. 방어비용 담보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 ① 농협은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힘으로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 포함. 이하 "기소"라 합니다)된 경우에는 1사고

마다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방어버용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공제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차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공제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농협은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1. 보통약관 1종 및 2종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의한 사고
- 2. 피공제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 3. 피공제자가 도로교통법 제40조, 제41조에 정한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4. 피공제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제3조 【계약의 소멸】

- ① 보통약관 1종 또는 제2종 제7조(계약의 소멸)의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농협은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 이외의 원인으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농협은 그 때

까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협이 적절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공제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해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1종 및 2종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1종에서 정한 제14조(사망공제금)의 사망공제금, 제15조(후유장해공제금)의 후유장해공제금 및 제18조(만기축하금의 지급)에서 정한 만기축하금 및 보통약관 2종에서 정한 제14조(사망공제금)의 사망공제금, 제15조(고도후유장해공제금)의 후유장해공제금 및 제18조(만기축하금의 지급)에서 정한 만기축하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4. 형사합의지원금 담보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 ① 농협은 공제가입증서(공제약관)에 기재된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자동차중 이륜자동차를 제외합니다) 사고로 피공제자가 타인(피공제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인 경우는 제외합니다)을 사망케 하거나,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별표 2> 참조)에 해당하는 사고(단, 이 단서중 7., 8.은 제외합니다)를 일으켜 피해자(피공제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및 피공제자가 운전하던 자동차의 탑승자 제외합니다)가 42일(피해자 1인 기준이며, 다수 피해자의 진단일을 합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상 치료(입원 및 통원을 포함합니다)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1사고마다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형사합의지원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공제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각각 형사합의지원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에 피공제자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42일 이상 진단시	타인 사망시
300만원	1,000만원

- ② 제1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차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공제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농협은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1. 보통약관 1종 및 2종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의한 사고
- 2. 피공제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 3. 피공제자가 도로교통법 제40조, 제41조에 정한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4. 피공제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 5. 피공제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제3조 【공제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공제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공제수익자가 형사합의지원금을 청구할 때에는 농협은 보통약관 제33조(공제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의 구비서류와 "피해자의 진단서" 및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4조 【계약의 소멸】

- ① 보통약관 1종 또는 제2종 제7조(계약의 소멸)의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농협은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 이외의 원인으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농협은 그 때까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협이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공제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해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5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1종 및 2종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1종에서 정한 제14조(사망공제금)의 사망공제금, 제15조(후유장해공제금)의 후유장해공제금 및 제18조(만기축하금의 지급)에서 정한 만기축하금 및 보통약관 2종에서 정한 제14조(사망공제금)의 사망공제금, 제15조(고도후유장해공제금)의 후유장해공제금 및 제18조(만기축하금의 지급)에서 정한 만기축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5. 공제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제1조 【공제료의 납입】

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의 거래은행(우체국을 포

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지정계좌를 이용하여 공제료를 자동 납입합니다.

제2조 【공제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계약청약서에 기재된 공제료 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농협과 계약자가 별도로 정한 일자로 합니다.

제3조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 또는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즉시 농협에 알려야 합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16.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

제1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 ① 이 특별약관은 공제계약(공제약관을 말하며,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그 특별약관도 포함합니다. 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을 체결할 때 공제계약자의 청약과 농협의 승낙으로 보통약관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 ② 보통약관이 해지,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① 농협은 보통약관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하는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통약관에서 정한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② 제1항의 이륜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이륜자동차[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
게 제작된 2륜의 자동차(2륜인 자동차에 1륜의 축차를 붙인
것과 배기량 125ㄴㄴ이하로서 3륜이상인 자동차를 포함합니
다)와 배기량이 50ㄴㄴ미만(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정격 출력이 0.59킬로와트 미만)인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 ③ 피공제자에게 공제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고가 이륜자
동차를 운전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인가 아닌가는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거주하는 관할 경찰서에서 발행한 사고처
리 확인원등으로 결정합니다.

제3조 【해지된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

농협은 이 특별약관의 부활(復活)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보통약
관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보통약관의 부활 규정에 따
라 보통약관과 동시에 이 특별약관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
약관을 따릅니다.